

#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. 12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대전의 축구·배구발전과 시민 체육육성을 위하여 대전시티즌과 대전삼성 블루팡스배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관련 부칙 적용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대전시티즌과 삼성블루팡스배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의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함(안 부칙 제2항 등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6. 11. 24 ~ 12. 14 / 접수의견 없음

##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체육시설”을 “대전광역시 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단서중 “한다”를 “본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 각 호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조례 제2640호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조례 제3165호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조례 제3325호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조례 제3325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(생략)</p> <p>1. “체육시설”이라 함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.</p> <p>2. ~ 12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대전광역시 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----- -----</p> <p>2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조(사용료의 징수)</b> ①~② (생략)</p> <p>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전용자는 초과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.</p> <p>④~⑤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사용료의 징수)</b>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본다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3조(사용료의 감면)</b>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(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3조(사용료의 감면)</b>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의2(이용료의 경감) 시장은 별표 3의 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이 경우 경감대상시설은 주경기장, 수영장, 야구장, 정구장, 인라인하키장, 사정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말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부칙(조례 제2640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(적용시한)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</p> <p>부칙(조례 제3165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(적용시한)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</p> <p>부칙(조례 제3325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(적용시한)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</p>	<p>제13조의2(이용료의 경감) ----- -----<del>각호의 어느 하나</del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(조례 제2640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부칙(조례 제3165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부칙(조례 제3325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國民體育振興法

[일부개정 2004.10.16 법률 제7234호]

第15條의2 (餘暇體育의 육성)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餘暇를 善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餘暇體育活動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競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競馬와 競輪·競艇등 國民餘暇體育活動이 건전하게 施行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### 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

제18조 (여가체육의 육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가체육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레크리에이션의 지도·보급
2. 여가체육 관련단체의 육성·지원
3. 프로경기의 육성 및 운영의 지도
4. 경마·경륜 및 경정의 건전운영지도
5. 기타 여가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
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07 1 29 !

행정자치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 1 12 !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7 1 15 !

3. 상 정 일 자 : 163 ( )  
제1 (2007. 1. 29)  
상정, , 원안가결

## II. 제안설명요지( : )

### 1. 제안이유

대전의 축구·배구발전과 시민 체육육성을 위하여 대전시티즌과 대전 삼성블루팡스배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관련 부칙 적용 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대전시티즌과 삼성블루팡스배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의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함( 2 ).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 )

#### ○ 본 조례 안은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의해 대전시티즌과 프로배구단 운영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부칙 적용 시한이 2 1으로 규정 되어있어, 2 1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부칙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IV. 토 론 요 지 : 생 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VI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